

부산지방법원 2022. 8. 18 선고 2021나53382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부산지방법원 2022. 8. 18 선고 2021나53382 판결

부산지방법원 2021. 5. 26 선고 2019가단321920 판결

전문

원고, 항소인 1. A

2. B

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기

피고, 피항소인 1. C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종국

2. D

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득열, 고민삼, 조희찬

3. E

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종국

변론종결 2022. 7. 7.

판결선고 2022. 8. 18.

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. 5. 26. 선고 2019가단321920 판결

주 문

1.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 C 주식회사(이하 ‘피고 C’이라 한다)는 원고 A에게 35,771,6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. 4. 18.부터, 원고 B에게 60,331,9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. 3. 15.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 피고 D와 피고 C 사이에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각 부동산’이라 한다)에 관하여 2019. 4. 17.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. 피고 D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등기과 2019. 4. 30. 접수 제1878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 피고 E와 피고 C 사이에 별지 제2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9. 4. 1. 체결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한다. 피고 E는 원고 A에게 36,478,600원, 원고 B에게 62,365,06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,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,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.

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,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【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】

○ 제1심판결 제6면 제8행 아래에 “또한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(대법원 2006. 11. 9. 선고 2006다54637, 2006다54644(병합) 판결 참조).”를 추가한다.

○ 제1심판결 제6면 제9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.

【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, 원고들이 피고 C에 재직할 당시 등기임원은 아니었던 사실, 피고 C은 원고들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, 원고들이 피고 C의 사업장에 국민연금, 건강보험, 산재보험, 고용보험 등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.

○ 제1심판결 제6면 제10행 “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,”를 “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”로 고친다.

○ 제1심판결 제6면 제10행 “을가 제7 내지 11, 16, 17호증의 각 기재”를 “을가 제7 내지 11, 16, 17, 22호증의 각 기재”로 고친다.

○ 제1심판결 제6면 11행 “증인 G의 증언”을 “제1심 증인 G의 증언”으로 고치고, 제1심판결 제6면 제11행 “증인 G의 증언” 뒤에 “이 법원 증인 I, J의 각 일부 증언”을 추가한다.

○ 제1심판결 제7면 10행 “없다”를 “없는 등 원고들이 피고 C의 취업규칙, 복무규정, 인사규정 등의 규율을 받거나 출, 퇴근이나 휴게 등에 관한 근태관리를 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다. 원고들이 맡은 업무의 특성상 외근이 잦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, 원고들의 출·퇴근 시간이 상당히 불규칙한 점에 비추어 원고들이 일반적인 근태 관리의 대상이 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”로 고친다.

○ 제1심판결 제7면 제10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.

【⑤ 피고 C의 직원들이 일반적으로 매월 200만 원 내지 3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았던 반면, 원고들은 각 상무이사, 전무이사로 근무하면서 매월 5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는 등 보수에 있어서도 다른 직원들보다 현저한 우대를 받았다.

⑥ 민법 제683조는 ‘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’고 규정하고 있고, 피고 C 대표이사 K이 원고들의 업무에 관하여 최종결재를 하거나 승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C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 이러한 사정들만으로 피고 C이 원고들에게 업무 수행 과정에 상당한 지휘·감독을 하였다고 단정하기

어렵다.

⑦ 원고 B는 영업 부분 총예산 중 세부 지출 비율을 결정하는 등 피고 C 영업 업무 전반에 대하여 상당한 권한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.

⑧ 원고 B는 피고 C에 입사하기 전 주식회사 H에서도 구매이사로 근무하였고, 특정 제약회사와 친분이 있어 이를 영업 업무에 활용하기도 하였으며, 일부 제약회사의 제품을 부산 지역 내에서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.

⑨ 원고들은 2019. 4. 24.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 C의 대표이사인 K을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위반 혐의로 진정하였으나, 부산지방검찰청은 2021. 6. 17. 원고들이 피고의 임원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일정한 사무의 위임을 받아 수행한 자로서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K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.】

2. 결론

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.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,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장병준, 판사 안혜미, 판사 허성민

별지